

부산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1나429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13. M

14. N

15. O

16. P

17. Q

18. R

19. S

20. T

21. U

22. V

23. W

24. X

25. Y

26. Z

27. AA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

피고, 항소인 A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용, 정지현, 이수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보미

변 론 종 결 2021. 11. 3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7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가단312056 판결

## 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AC과 피고 사이에 2018. 10. 3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AC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8. 10. 31. 접수 제25946호로 마친
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 이 유

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 2. 추가판단

### 가. 피고 주장의 요지

AC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,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만큼 AC의 채무가 증가하였지만 그 2억 원을 원고들 등 AC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그만큼의 채무가 감소하였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 감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(이하 ‘①주장’이라 한다). 피고가 AC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제1심에서 피고의 대여사실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(이하 ‘②주장’이라 한다).

### 나. 판단

먼저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), A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

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A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원고들 등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, AC의 신규채권자가 된 피고를 위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.

다음으로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AC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박민수, 판사 신민석, 판사 양우창

## 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광역시 금정구   동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금정구 

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1층 공동주택(아파트)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: 

건물내역: 철근콘크리트조 150.13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부산광역시 금정구  대 66089.8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종류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66089.8분의 69.94

(피고  지분전부)

